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대학평가원과 일본고등교육평가기구 간의 양해각서

이 양해각서는 대한민국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대학평가원 (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 디폴리스 A동 23층, 이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대학평가원'이라 함)과 일본국 일본고등교육평가기구 (도쿄도 치요다구 구단기타 4-2-11 제2성광빌딩 2층, 이하 '일본고등교육평가기구'라 함) 간에 체결한다.

전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982년에 설립되었으며, 4년제 대학의 주요 관심사에 대하여 대학 간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공공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한국대학평가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부설기관으로, 대학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대학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데 기여한다.

일본고등교육평가기구는 사립대학을 위한 민간 비영리단체로 2004년 설립되어, 대학의 교육연구활동을 평가하고 대학의 자율적 질 제고와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일본의 대학 발전 촉진에 기여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대학평가원과 일본고등교육평가기구

양 기관은 고등교육분야의 질 보증 추진이라는 유사한 사명과 목표에 따라 상호 이익에 부응하는 연계 협력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관계 강화에 힘쓴다.

제1조 목적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대학평가원과 일본고등교육평가기구는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양국의 외부 질 보증 활동 강화를 위해 우호적인 협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양국 고등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제2조 협력 분야

양 기관은 서로의 법률, 규칙, 규제, 정책 등을 존중하며 다음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가. 질 보증 관련 정보 교환 (기밀이 아닌 정보에 한함)

나. 질 보증 관련 프로젝트 협조 및 우수사례의 확산과 보급

다. 상호 관심분야 공동연구 수행, 정기 학술교류 및 성과의 국제적 공유

라. 양 기관 직원의 전문성 신장 기회 제공

마. 필요 시 상대측 평가에 옵저버 참여 등 전문가 교류

바. 그 밖의 양측 합의에 근거한 활동에 관한 협력

제3조 양해각서의 변경

양 기관은 우호와 협력 정신에 근거하여 양해각서에 서명한다. 양해각서의 조항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책임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체결 당시 허향진), 한국대학평가원 원장 (체결 당시 최준열)과 일본고등교육평가기구 이사장 (체결 당시 쿠로다 토시지)은 양해각서 조항의 이행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책임은 해당 협력 내용에 관한 양 기관의 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재원

특정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치가 별도로 합의되지 않는 이상, 양해각서의 조항 이행에 관련된 비용은 양측이 각자 부담한다. 다만 특정 협력분야의 경우에는 다른 재원의 기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효력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로부터 유효하고, 일방에서 1개월 이전에 서면통보로 해지하지 않는 이상 5년간 유효하며, 양측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양해각서는 한국어, 일본어, 영어의 3개 언어로 작성하며, 모든 문서는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다만 각 언어의 문서 간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영어 문서의 효력이 앞선다.

양측 대표자는 각 문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서명한다.

체결일: 2016. 12. 16

허향진

회장 **허향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한민국)

체결일: 2016. 12. 16

최준열

원장 **최준열**

한국대학평가원

(대한민국)

체결일: 2016. 12. 16

黒田壽二

회장 **쿠로다 토시지**

일본고등교육평가기구

(일본)